

# 부 산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12고단8357 강제추행  
피 고 인 A  
검 사 기노성(기소), 이세원(공판)  
변 호 인 법무법인 A'  
담당변호사 A''  
판 결 선 고 2013. 4. 10.

## 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.

## 이 유

### 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"G센터"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.

피고인은 2012. 3. 24. 01: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'B 노래방' 내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최○○(여, 27세)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,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살짝 만지고, 계속하여 다른 일행인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.

## 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

1. 증인 D의 법정진술

1.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

1. 각 수사보고(녹취록 파일내용 요약 및 CD첨부, 참고인 E, F 전화진술 녹음)

## 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

형법 제298조

1. 형의 선택

징역형 선택

## 유죄 및 양형의 이유

1. 유죄의 이유

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고,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,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, 즉 ① 피해자의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한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한 점,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요청에 따라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던 점,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G센타에 근무한 기간은 한 달을 조금 넘긴 정도이고 그 신분도 시간제 근로자로 등록되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, 그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 내 신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피고인과 C이 불러낸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을 작출하였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, ④ 2012. 4. 26.자로 녹

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면서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수세적인 태도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, ⑤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C과의 사이에 피해자를 두고 어깨동무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점, ⑥ 피고인은 사단법인 I 이사장인 H이 피고인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, 피해자가 위 H의 사주에 의해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, 혹 H이 사후에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시도한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나, 사전에 피해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, 피고인도 대질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보니 H과 공모하여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## 2. 양형의 이유

### 가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
강제추행죄 제1유형(일반강제추행) 기본영역: 징역 6월 ~ 2년

### 나. 집행유예 여부

진지한 반성 없음: 집행유예 선택하지 않음

### 다. 선고형의 결정

징역 10월: 자신의 범행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없고, 신분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직원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,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.

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.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건강상태, 가정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,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.

### 신상정보 제출의무

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,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,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,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.

판사      김태규 \_\_\_\_\_